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인큐베이터 「선거아카데미」를 시작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선거구와 후보자의 수가 많아서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고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정치 신인들이 많아 선거준비와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선거법을 몰라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돈은 묵고 말과 발을 풀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왔고, 금권·관권·흑색선전 등 선거부정을 뿌리 뽑기 위하여 지도·단속 활동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아닌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6년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구체적인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중립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발 774건, 수사의뢰 483건 등 상당 수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정치선진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선거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치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선거아카데미는 출마 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

나라 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후보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위원회가 선거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이 아닌 후보자 중심, 즉 수요자 중심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로 수준 높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정당당당하게 경쟁하며, 유권자는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선거아카데미의 교재로서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발간한 것으로서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썸록,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여러분들이 선거아카데미에서 정치관계법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전략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후보자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그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평가해 보면서 다가올 지방선거가 참다운 일꾼을 선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각 정당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1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

제1장 선거운동	10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0
1. 선거운동의 개념 / 10	
2. 선거운동기간 / 14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단체 / 15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 21	
제2절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29
1. 입후보예정자의 개념 / 29	
2.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 30	
제3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32
1. 선거사무소 설치 / 32	
2.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34	
3. 전자우편 발송 / 37	
4.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 38	
5.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배부 / 40	
6. 예비후보자의 기타 선거운동 / 42	
제4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44
1. 당내경선의 개념 / 44	
2. 선거사무소·명함·전자우편 / 45	
3. 홍보물 발송 / 47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 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50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50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60	
3. 대담·토론회 / 65	
4.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72	
5.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 79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84	
7. 기타 선거운동 / 85	

제2장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94**

제1절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	94
1. 기부행위 / 94	
2.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 107	
3.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 111	
4.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115
5. 선거일후 답례 / 118	

제2절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행위	120
1. 사전선거운동 / 120	

제3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24
1. 시설물 설치 / 124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 129	
3.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132	
4.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 / 134	
5.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 1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제4절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42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 142	
2.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145	
3.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151	
4.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153	
5. 방송·신문 등의 광고 / 154	
6. 구내방송, 녹음기, 타연설회 / 155	
7. 야간연설, 각종 집회 / 157	
8.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 160	
9. 행렬·호별방문·서명날인운동 / 162	
10.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 167	
제3장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172
제1절 정치자금의 조달	172
1. 정치자금의 개념 / 172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 173	
3.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 174	
제2절 정치자금의 지출	178
1.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구분 / 178	
2. 정치자금 지출의 회계처리 / 183	
제3절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86
1. 선거비용 보전 / 186	
2.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 1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회계보고 및 공개	190
1. 회계마감 / 190	
2.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90	
3. 회계보고내역 열람·사본교부 / 190	
4. 회계장부 등의 보존 / 191	
제4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194
제1절 당내경선과 입후보	194
1.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한 / 194	
2. 사례별 입후보 제한 여부 / 195	
제2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196
1.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 196	
2. 사직시기 / 198	
3. 사직의 예외 / 199	
제3절 예비후보자 등록	199
1.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199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0	
3.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 205	
제4절 후보자 등록	208
1. 후보자 등록 절차 / 208	
2. 정당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208	
3.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 211	
4. 후보자 등록 무효 / 219	





제1장

제1장 선거운동

- 제1절 선거운동 일반
- 제2절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 제3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제4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 제5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개념

1] 핵심정리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2] 보충설명

- 본 자료에서 기술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도 공선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공선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별 조항에서 그 시기·주체·방법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은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을 피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불법선거운동을 판단함에 있어 선거운동의 정의개념은 유용함. 다만, 법적인 개념정의를 선거운동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못함.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포함)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선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제7조).
-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적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정당법 제37조).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 후보자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넷째,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에 착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내용, 장소, 방법, 대상, 범위, 태양, 행위자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공선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다분히 포괄적이고 불특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개의 다양한 행위나 활동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법으로 망라하는데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보는 행위나 활동은 그 시기·장소·대상·목적·동기 또는 그에 수반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내지는 원칙만을 정한데 따른 것임.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행위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 내지는 원칙에 따라 개별적·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4. 4. 27. 2002도315).
-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행위의 시기·내용·방법·대상·행위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2005. 8. 29. 회답).

○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인지 여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의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음(대법원 2004. 4. 27. 2002도315).

○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구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공선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2)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2. 11. 6. 회답).
-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약국에 찾아가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관행이나 예절에 비추어 볼때 이는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2. 10. 13. 95도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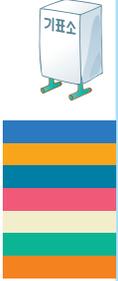
- 신년교례회는 지역유지들의 순수한 신년인사모임으로서 동 회의 책자에 국회의원·시장·시의장 등이 사진과 직명 또는 성명을 표기하여 새해인사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1994. 11. 14. 회답).
- 국회의원이 하절기 영농철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선거운동기간전에 문안인사와 가뭄걱정 및 그에 대한 역점사업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1995. 5. 23. 회답).
-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제9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조 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2004. 2. 10.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대법원 2005. 9. 15. 2005도2246).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함(대법원 2005. 9. 9. 2005도2014).





2. 선거운동기간

1 핵심정리

- 1. 원 칙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2. 예 외
 - 예비후보자 등이 공선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언제든지 가능)

2 보충설명

-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이유(헌재 2000헌마121,202, 94헌마97, 93헌가4,6)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됨. 또한,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내용,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헌재 2000헌마121,202, 94헌마97, 93헌가4,6).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단체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핵심정리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첫째,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둘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

2. 공선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이하 같음)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보충설명



- 공선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60조에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을 할 때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첫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둘째,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 정당의 기관지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둔 1명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활동보조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두어야 하며, 국가는 후보자를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부담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장 등)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1994. 12. 22.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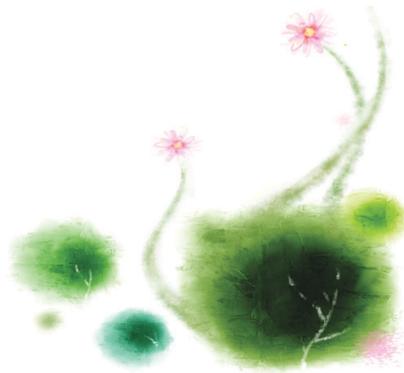
2) 할 수 있는 사례

○공무원의 배우자가「정당법」제22조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고, 법 제6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음(2006. 1. 25. 회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 60조에 위반 될 것임(2002. 11. 29.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2004고합16)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1 핵심정리

아래의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2 보충설명

-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유지하고 있음.
-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므로, 단체의 회원 개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헌법재판소 1995. 5. 25. 95헌마 105).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에 있으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후보자나 정당도 공선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선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5. 5. 13. 2004도3385).
-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또한,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2002. 5. 31.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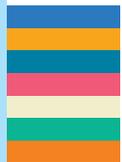
- 노동조합이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소속조합원에게 고지·안내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기관지에 단순히 그 결정사실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3. 5. 23. 회답).
- 단체가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2002. 6. 3.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공보 등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또는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이용 지지 권유,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유사기관의 설치, 현수막 등 설치, 어깨띠 착용, 인쇄물 배부, 확장장치 및 자동차 이용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 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4. 1. 9.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법 제93조에 위반됨(대법원 2005. 5. 13. 2004도3385).
-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지후보자 결정내용을 유인물 등을 통해 소속구성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반됨(대법원 2002. 3. 12. 2001도6511).
-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외벽에 설치한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됨(부산고등법원 2004.11.17. 2004노787).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 1. 28. 2004도227).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가. 선거운동기구

① 핵심정리

1. 선거별 선거운동기구 설치수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구 분		선거사무소	선 거 연 락 소
시·도지사선거		1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1개소 ○하나의 구·시·군이 20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시·도 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1	○둘 수 없음.
	비례 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1	○둘 수 없음.
자치구· 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1	○둘 수 없음.
	비례 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1	○둘 수 없음.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선거운동기구 설치 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음.
- 선거운동기구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 정당·정당추천 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음.



3. 선거운동기구에 홍보물 설치

①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수량에 제한없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간판·현판·현수막에는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②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만의 사진 첨부·게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이를 첨부·게시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이를 첨부·게시할 수 없음.

구 분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기 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	각각 50매이내	50매이내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벽보의 규격(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벽보 규격)의 2배이내의 크기로 하되,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선거연락소	각각 30매이내	30매이내	
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	비례대표	각각 50매이내	후보자마다 10매이내	
	지역구	각각 20매이내	20매이내	
자치구·시·군 의 장선거	선거사무소	각각 30매이내	30매이내	
	선거연락소	각각 20매이내	20매이내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선거 사무소	비례대표	각각 20매이내	후보자마다 10매이내	
	지역구	각각 20매 이내	20매이내	

4. 기 타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구를 공동 설치한 경우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보며, 그 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비용은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음.

㉔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구·시·군선거연락소는 당해 구·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선거연락소장을 공동선임할 수 있음(1997. 11. 19. 회답).
- 기초단체장 선거구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갑, 을 지역구로 된 경우 (갑)지역구내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을)지역구내에 설치할 선거연락소를 (갑)지역구내에 선거사무소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음(2006. 5. 10. 회답).
- 선거사무소에 첨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과는 별개로 간판·현판·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그리거나 인쇄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소에 첨부할 수 있는 사진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함(2000. 3. 28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출판사사무실과 선거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음(1995. 5. 19 회답).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선거사무소는 그 구·시·군의 사무소(청원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청주시)안에 설치할 수 있을 것임(2006. 3. 14. 회답).
-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명함,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사용하거나 전자우편을 공동명의로 전송하는 때에는 위반될 것임(2006. 4. 4. 회답).
-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으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법정수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기호·선거명·자신의 예비후보자명과 “공작정치 중단하고 최○○를 체포하라”는 구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26. 회답).
-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하거나, 제68조 및 제105조에 따른 어깨띠 등의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발광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11. 2. 회답).
- 법 제61조제6항 및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될 것이나, 보전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2008. 3. 3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그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후보자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함(대법원 1999. 5. 25. 99도675).
- 부동산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신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동창생등이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기존의 시설인 위 부동산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였음(제주지방법원 1998.10. 14. 98고합127).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대법원 1997. 3. 11. 96도3220).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LED(Light Emittig Diode) 전광판을 설치·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사진, 소속정당의 심벌마크 등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 제61조제6항에 의한 간판·현판·현수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설치·게시할 수 없을 것임(2006. 4. 3. 회답).
-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를 이용하여 붙인,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는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함(대법원 2005. 1. 13. 2004도 7360).





나. 선거사무관계자

1 핵심정리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5인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3인 이내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내

2.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함.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구 분		선 거 사 무 소	선 거 연 락 소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 이하 이 표에서 같음)수(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 당해 구·시·군안 읍·면·동수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경우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이내
시·도 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10인 이내	○해당없음.
	비례 대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수(20미만인 때에는 20인)이내	○해당없음.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8인 이내	○해당없음.
	비례 대표	당해 자치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해당없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3. 기 타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후보자는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 정당·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사무원을 공동 선임한 경우 후보자가 각각 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비용은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으므로 선거연락소장을 둘 수 없음.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2006. 5. 17. 회답).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이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들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1997. 11. 27. 2004. 3. 31. 회답).
- 공선법 소정의 유급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됨(대법원 2005. 1. 27. 2004도7511).
- 후보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할 수 있는 사례

- 지역구후보자가 같은 정당이 추천한 다른 지역구후보자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고,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비례대표선거사무장을 할 수 있음(2004. 4. 7. 1963. 11. 14 회답).
- 선거기간중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를 위해 30회선의 임시전화를 가설한 후 전화홍보팀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28.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없음(2006.4. 24. 회답).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에 붙어 있던 사람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발행의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패용하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음(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2. 10. 17. 2002고합371).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반으로 처벌



제2절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1. 입후보예정자의 개념

① 핵심정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이나 중앙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가 될 의사에 대한 판단은 그 의사의 외부표시 또는 그 의사를 예상할 수 있는 지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②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 당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5. 12. 22. 2004도7116, 2005. 9. 29. 2005도2642).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는 동일한 개념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만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그 후 실제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에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후보자가 되려는 자 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9. 2. 26. 98도3802).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특정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하거나 입후보의사를 객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그 지구당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라면 일단 특정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음(1963. 9. 7. 회답).

2.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1] 핵심정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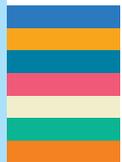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의 개설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선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게재내용에 제한이 없음 (2007. 11. 2. 회답).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공무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공선법상 제한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2006. 1. 5.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방송을 나오게 하거나, 음악방송이 나오는 사이트를 링크시켜 접속자가 클릭을 하여 음악방송을 듣게 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음악방송 중간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DJ가 되어 선거운동 멘트 및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을 것임(2006. 4. 17. 회답).
-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서로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2006. 4. 28. 회답).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가 퍼가기 또는 스크랩 기능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관한 동영상물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신의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퍼나르는 때에는 위반될 것임(2007. 4. 13. 회답).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2006. 3. 23. 회답)

-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성명 등으로 검색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이 나타나도록 등록하는 경우 무방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여러 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배너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연예인, 공인의 사이트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시된 배너를 게시하는 것은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 포털 혹은 일반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을 게시할 수 없음.

3)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도토리 또는 유료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방문객들로부터 도토리 등을 받아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2006. 3. 23. 회답).
- 제59조 단서 제3호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이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5. 1. 27. 2004도 7488).
- 선거구민이 특정 단어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것은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6. 11. 17. 회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홈페이지의 방문자수·조회수·댓글수·회원수·시청자수·사이버머니 양 등을 각 후보자별로 비교하여 순위정렬·그래프·별표 등의 방법으로 순위·우열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유리·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위반될 것임(2007. 4. 13. 회답).

제3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① 핵심정리

1. 시 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2. 사무소수 : 1개소
3. 방 법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수량제한없이 설치·게시
4.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안에 들 수 없음.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사무소에 들 수 있음.
5. 간판·현판·현수막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법에 제한·금지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음.

② 보충설명

-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4.회답).
- 현수막 등의 규격과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횡수에 관계없이 게시된 간판 등은 교체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됨.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공선법에서는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예비후보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 제62조에 의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은 선임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선거사무소의 기능·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는 간판등 외에 홍보물을 첨부할 수 없으나,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선거구호·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2)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를 자동차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된 설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고정된 후에는 이동해서는 아니됨.
- 천으로 된 선거운동기구의 현수막에 광섬유를 접목하여 빛을 내는 것이나, 필름에 전류를 흘려서 발광하여 기존 형광등처럼 빛을 내어주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등의 뒤에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홍보물의 변형없이 밤에 잘 보이게 하는 형광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11. 2. 2007. 11. 23. 회답).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내용(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출신 ○○○사무소입니다 등)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3. 13.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시 건물 외벽면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2009. 8. 20.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간판 등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으나,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임(2006. 4. 13. 2008. 3. 11. 회답).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2008. 1. 30. 회답).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2008. 12. 10. 회답).

2.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1 핵심정리

1.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후보자등록 이후에도 제9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2.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3.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4.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 명함은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격 범위 안이라면 원형 등으로 제작할 수 있고(2008. 2. 25. 회답), 접지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규격범위 이내이어야 함.
- 예비후보자 등은 지하철역구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으나, 후보자로 등록된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동 장소에서 이를 배부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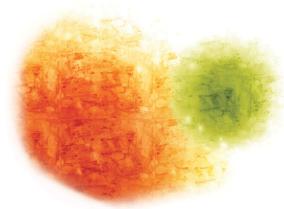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명함의 종류, 색상, 재질과 그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예비후보자는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수량도 예비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됨. 다만, 동시에 2종류 이상의 명함을 동일인에게 배부할 수는 없음.
-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고,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제외됨[인천지방법원 2006. 9. 14. 2006고합410?500].

2)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에 현역 국회의원이 같이 동행하거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에 현역 국회의원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국회의원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선법에 위반될 것임(2006. 4. 28. 회답).
- 예비후보자의 명함의 재질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PET 소재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17. 회답).
-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명함수교시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위의 선임·신고된 자 외의 자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5. 18. 회답).
-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발전자문위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4. 17. 회답).
- 당선무효로 시장 직을 상실한 자가 명함 등에 “전 ○○시장”, “민선2기 ○○시장 역임”이라고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2006. 5. 12.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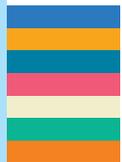


3)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넣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는 등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대법원 2004. 8. 16. 2004더3062).
-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만을 주는 행위는 물론 지지호소만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도 동 금지장소에서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할 수 없을 것임(2006. 1. 26. 회답).
- 국회의원이 안경 등을 닦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PVC·스웨드 소재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2006. 11. 13. 회답).
-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임(2008. 2. 19. 회답).
- 국제변호사란 명칭은 공선법상의 명칭도 아니고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도 없으므로 명함·선거공보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5. 3. 회답).





3. 전자우편 발송

1 핵심정리

1. 시 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2.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3. 기 타
 -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2 보충설명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아닌 정당·입후보예정자·제3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하여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모든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명함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mail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제82조의5에 의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006. 1. 17.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입후보 하고자 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밝혀 그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발송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위반될 것임. 다만, E-mail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제82조의 5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6. 3. 28. 회답).

4.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① 핵심정리

1. 홍보물 작성

-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 규 격 등 : 길이 27cm 너비 19cm, 8면이내
 - ※ 발송횟수 및 수량 범위 내라면 색도·지질·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홍보물 우편발송

-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1회
-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3.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신고
-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당해 우체국의 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

② 보충설명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름.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1회 우편발송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예비후보자의 소속정당의 심벌 · 정당명, 선거명 · 선거구명, 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발송용 봉투 앞면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2008. 2. 5. 회답).
- 편지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 게재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1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2008. 2. 13.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포함)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1. 26. 회답).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봉투 뒷면에 ○○당 대표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1. 10. 회답).
- 같은 정당 추천 예비후보자가 각각 작성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동일한 봉투에 함께 발송하고 발송비용을 균등 분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8. 28.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로 “정당 투표, ○○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4랑해요! ○○당”이라고 게재하는 경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6. 5. 10. 회답).



5.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1 핵심정리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2. 형태 및 종수 :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 1종
3.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다만, 방문판매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4. 내 용
 -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 조달방안을 게재
 -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함.

2 보충설명

-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앞면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무소속)을 적어야 하고,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 판매가격, 출판사(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함.
-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판매를 위하여 공선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공선법에 의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므로 무방함.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판매된 경우 발간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금액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고,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2008. 5. 2. 회답).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1종, 도서형태로 발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색도·규격·면수는 예비후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것이고, 재질은 통상적으로 도서 발간에 사용되는 재질이라면 제한되지 않음.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PDF 파일로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 7. 7. 회답).
- 선거일전 90일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 5. 2.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거리에서 가두판매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출판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선거공약집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때에는 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6. 예비후보자의 기타 선거운동

가. 어깨띠 · 표지물 착용



① 핵심정리

1. 주 체 : 예비후보자
2. 내 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 행위
 -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행위

②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규격 범위내라면 그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질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없음.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라면 2개 이상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음.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 · 사용할 수 있음.

3)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이를 착용할 수 없음.



나. 전화·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1 핵심정리

1. 주 체 : 예비후보자

2. 내 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제한내용

- 문자메시지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는 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 공선법에서는 제109조제1항에 따른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60조의3, 제82조의4 및 제82조의7에 따른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제4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1. 당내경선의 개념

① 핵심정리

-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이에는 ① 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우, ②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아래의 「2 내지 4」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보충설명

- 정당은 그 소속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이는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정한 경쟁 보장 및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공선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당내경선과 입후보제한 내용은 P194 참조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공선법 제57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기에 따라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임(2009. 12. 11.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2. 선거사무소 · 명함 · 전자우편

1 핵심정리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을 각각 1개씩 (모두 합하여 3개)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경선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당내경선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중 선거사무소, 명함, 전자우편에 관한 선거운동방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동일함.
- 경선후보자도 예비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경선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공선법에는 당내경선 준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여부는 당헌 · 당규에서 정할 사항이고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의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될 것임(2006. 3. 22.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없이 다과접대 · 차량운행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의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경선운동의 기획 · 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제230조제7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2007. 1. 19. 회답).



- 당내경선선거사무소 1개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1개소를 각각 설치하거나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 공동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2007. 4. 19. 회답).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명함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에 다른 금지·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제5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9. 19. 회답).
- 경선준비사무소에서 정책공약을 개발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일정 등을 선거구민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1. 17.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 공동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장소의 건물에 별도의 공동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각각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될 것임(2007. 4. 19. 회답).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외에 지역별 경선사무소 또는 경선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6. 29. 회답).
- 개인사무소 등에서 당내경선 관련 모임을 일시적으로 갖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경선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활동내용이 경선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이르는 경우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6. 29. 회답).





3. 홍보물 발송

1 핵심정리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훈보물을 1회에 한하여 작성·발송할 수 있음.
- 작성수량 : 경선선거인수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
- 규격·면수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은 8면) 이내
- 표시내용 : 작성근거, 인쇄소 명칭·주소·전화번호,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

2 보충설명

- 제57조의3제1항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중에서 전자우편·경선훈보물(명함 제외)의 내용 및 합동토론회 등에 있어서 학력은 공선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컨대 ‘○○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 사무총장’이나 ‘○○대학교 평생대학원 1기 회장’ 등이라 사실대로 게재하는 경우 무방할 것임.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당내경선훈보물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과 비교

- 규격이 동일하고 게재내용에 제한이 없고, 홍보물 앞면에 ‘경선훈보물 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며, 홍보물발송봉투에 ‘작성근거와 홍보물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일치함. 또한, 발송방법에 있어서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요금별납우편물 발송에 의한 발송 등이 동일함.

※ 경선훈보물에는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그 밖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의 지지·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만이 할 수 있음

- 적용선거, 작성수량과 작성면수(시·도지사홍보물 제외), 표시사항(홍보물 앞면과 봉투 제외), 배부대상·시기 등이 다름.



2)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 홍보물에 당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행동을 할 수 있는 제 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1. 26. 회답).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1] 핵심정리

경선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10제곱미터 이내의 현판과 현수막을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음.

2] 보충설명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는 경선선거일에 투·개표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음.
- 경선후보자가 설치·게시할 수 있는 현판과 현수막은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개최장소 내부에서 정당의 선전시설물이나 경선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피켓·풍선 등을 흔들면서 연호하는 것은 합동연설회 등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함. 다만, 개최장소 외부에는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치·게시가 금지됨.



2)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경선후보자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중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토론회의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2007. 8. 21. 회답).
- 경선기간 중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에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전자공보를 게시 또는 경선후보자를 소개·홍보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로 게시해 놓는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2005. 10. 13. 회답).
- 정당이 개최하는 합동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단순히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8. 2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토론회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옥내합동토론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행정학회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7. 25. 회답).



제5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1) 선거벽보

① 핵심정리

1. 작성·제출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작성하지 아니함)
2. 종수·지질·규격·수량
 - 종수·지질 : 100g/m²이내의 종이, 1종으로 작성
 - 규격 등 :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길이를 상하로 작성
 - 첩 부 : 음·면·동을 단위로 다음의 비율을 한도로 첩부하되, 기준매수의 2분의 1만 첩부

- 동 및 읍에 있어서는 인구 1천명에 1매
- 인구 2만명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 인구 1만명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명에 1매
- 인구 1만 이하인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

○ 보완첩부용 : 인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

3. 선거벽보의 게재내용

- 후보자만의 사진·성명·기호, 소속정당명(무소속)·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의원선거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 제외)
- 선거벽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등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4. 제출시기·첩부방법 등

- 제출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제출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 첨부방법 등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음.
-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지정함.
- 선거벽보는 기호 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첨부.
- 동시선거에서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첨부.
- 보완첨부 : 첨부된 선거벽보가 오·훼손된 경우 후보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임.

5. 이의제기

- 제기사유 : 내용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
- 제기방법 : 해당 선거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위원회에 서면으로 함.
- 공 고 : 상급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함.

6. 비방내용 고발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투표구마다 5매 공고문을 첨부하되, 선거일에는 추가로 1매를 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함.

7. 접수거부 및 업무의 계속 진행

- 종수·규격·수량·제출기한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 이의제기와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접수·첨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리, 류, 라'와 같이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이(리)○○, 유(류)○○" 또는 "이○○(리○○), 유○○(류○○)" 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2006. 4. 18. 회답). 또한, 본명과 예명·필명 등을 병기하더라도 무방함.
- 제64조제1항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함(서울고등법원 1998. 12. 22. 98노2589).
-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수학기간의 게재없이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2007. 11. 26. 회답), 정규학교를 중퇴한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취득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과정을 수학한 이력이라고 한다면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1998. 12. 22. 98노2589).

2)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의 사진 중 다른 사진(異種)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후보자만의 사진이라면 무방할 것임(2006. 5. 10. 회답).
- 선거벽보 등 경력란에 예비장관, 예비감사원장,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4. 9, 2000. 3. 29. 회답).
- 제49조제4항제6호에 의하여 학력에 대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5. 12. 29. 회답).
- 대학 또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이 인정된 자는 선거벽보 등에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이나, 초급대학졸업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학 사실은 학력 또는 경력으로 게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육군 보병학교 졸업은 군복무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임(2001. 7. 30. 회답).

○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경력사항으로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발급기관 및 자격취득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자격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할 것임(2002. 2. 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에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으므로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은 게재할 수 없으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뒷모습사진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3. 28. 회답).

○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은 ○○○(갑), 국회의원은 ○○○(을)”이라는 선거구호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벽보 등에 게재하는 것은 “대통령은 ○○○”의 부분은 대통령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임(1992. 3. 10. 회답).

○ 2년제인 한림정보산업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동 대학이 3년제 한림성심대학으로 변경되자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한림성심대학 졸업(유아교육)이라고 기재하여 배포하는 것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임(대법원 2006. 10. 26. 2006도5770).

○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구성함(대법원 1992. 8. 18. 92도1368).

○ 선거공보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사’라고 기재한 것은 그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다른 학력들과 별도로 경력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수료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함(대법원 2001. 2. 9. 2000수209).



2) 책자형 선거공보

1) 핵심정리



1. 작성·제출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정당)
2. 종류·규격 및 작성방법 등
 - 종 류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
 - 규 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1종으로 작성
 - 작성수량 : 해당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작성
 - 작성방법 :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책자형 선거공보”라 적는다)·선거명·선거구명 게재하되,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성명을 한 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함.
3. 점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제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한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그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 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 전과기록 : 금고이상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실효된 형 포함)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5. 책자형 선거공보의 통합작성

제65조제1항에 불구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음.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함.



6. 제출 및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는 아래와 같이 정당·후보자가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구·시·군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함.

구 분	제출(배부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발 송
부재자용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 동봉 발송
매세대용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시 동봉 발송

7. 기 타

-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
- 같은 정당 추천을 받은 2인 이상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 가능

2 보충설명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함.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게재하나, 소명자료는 함께 게재할 수 있음.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게재하거나, 둘째 면에 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자료(점자형 정보공개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됨.
- 규격과 면수이내에서 편철 등의 방법으로 제책하거나 병풍형태로 접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접어서 제출하는 경우 면과 면사이에 내용이 걸쳐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길이와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의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임(1996. 3. 8. 회답).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1종이란 규격·내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뜻하므로 소형인쇄물의 내용을 일부라도 다르게 제작한 것은 각각 1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색도만을 다르게 한 경우에는 동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임(1992. 11. 20. 회답).
- 선거벽보와 달리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진 게재 가능
-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이며, 돌출점자는 1색도로 보지 아니함(2002. 4. 22. 회답).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2007. 3. 2. 회답).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둘째 면에 게재하되 그 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연이어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홍보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6. 3. 30.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홍보물에 후보자가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선법 제25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2002. 5. 24. 회답).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증면이나 공동작성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다른 후보자의 홍보내용이 1개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후보자수가 1인일때는 1개면의 1/2이내, 2인 이상인 때에는 1개면 이내)안에서 무방할 것임(2006. 5. 16. 회답).
- 선거구위원회가 공고 또는 열람하도록 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소득세 납부 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4. 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무소속후보자연대를 결성하여 상호 공모하에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무소속연대라는 명칭을 게재하는 때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88조에 위반될 것임(2006. 4. 27. 회답).
-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작성하는 경우 배부대상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례대표시·도의원 책자형 선거공보와 비례대표자치시·군의원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것임(2006. 5. 8. 회답).
-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선거홍보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이 선거홍보물에 게재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임(1998. 4. 27. 회답).



3) 후보자의 명함 배부



1 핵심정리

1.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중
2. 배 부 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3.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4.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5. 배부방법 :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제93조제1항 단서는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되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2004. 8. 16. 2004도3062).

※ 현행은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명함을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놓는 경우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라도 위반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 8. 16. 2004도3062).





4) 선거공약서

1 핵심정리

1.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작성
2. 종수·규격 등
 - 종수 및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종으로 작성
 - 면 수 : 시·도지사선거 16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 이내
 - 수 량 :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3.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 중 1면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4. 배부방법 등
 - 후보자와 그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 다만, 우편발송(전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음.

2 보충설명

- 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 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선거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제66조에 따라 작성·배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작성하여 배부·판매하는 것은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9. 7. 회답).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 핵심정리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개념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함.

2. 연설·대담 주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3. 연설·대담의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연설시간

선거운동기간중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음.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

5. 연설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금지되지 않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6. 선거별 연설·대담자 및 자동차와 확장장치의 수

구 분	자동차(부착 확장장치 포함) 및 휴대용 확장장치의 수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1대·1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이상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장장치 1조만 사용할 수 있음.





7.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을 사용함에 있어 1개를 넘을 수 없음.
-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8. 인쇄물 등의 첨부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적정 수량 이내에서, 후보자 사진은 매수제한 없이 첨부할 수 있음.

9. 음악방송 등

후보자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10. 녹화기 화면의 규격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 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 5제곱미터이내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용 : 3제곱미터이내



㉒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소음상 방해뿐만 아니라 그 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연설·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1995. 1. 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공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집회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1997. 12. 29 회답).
- 연설·대담용 차량 이동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방영할 수 있을 것이나, 4개 이상 동시선거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2006. 3. 3. 회답).
- 확성장치가 육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증폭장치가 없는 것이라도 이에 포함됨.
-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1995. 5. 19. 회답).
- 선거법상 사용이 허용된 확성장치의 출력에는 제한이 없음(1995. 5. 2. 회답).
- 확성나발은 그 형태가 나발모양이든 사각형 모양이든지 불문하며, 일반오디오기기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2000. 3. 29. 회답).
-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역전광장은 연설금지장소인 정거장구내로 볼 수 없음(1963. 8. 26. 회답).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있어서 “옥내”라 함은 지붕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는 건물의 안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잠실야구경기장은 옥내로 볼 수 없을 것임(1994. 12. 22.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를 사용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6. 5. 8. 회답).
-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 중은 물론 이동 중에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2007. 11. 20. 회답), 이동 중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중 사용은 금지됨.
- 애드빔, 비디오전광판, 점보트론을 선거운동기간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1. 8. 1995. 2. 24. 1995. 4. 7. 회답).
- 녹음기·녹화기 음량이 작은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소리를 크게 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탑재된 녹화기 또는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점보트론에 내장된 앰프를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5. 15. 회답).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가 3면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연결된 경우 그 화면을 모두 합한 규격이 5제곱미터 이내라면 무방할 것임(2004. 4. 7.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제105조의 금지되지 않는 연호행위, 로고송을 따라 부르거나 그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함께 하는 경우 대가를 주어 동원하지 않고 일반 선거구민이나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2004. 4. 8.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정규학력외의 수학적 경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할 수 없을 것임(1998. 5. 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 언론보도내용을 방영하는 경우 소속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정책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될 것임(1998. 5. 13. 회답).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연설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음(2006. 5. 15.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자동차에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첨단유세로봇이 효과음·연설 등의 소리를 내거나 연설·대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사를 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경우 제90조 또는 제100조에 위반될 것임(2004. 3. 25. 회답).





3. 대담 · 토론회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1 핵심정리

1. 초청주체 · 단체

※ 다만, 다음의 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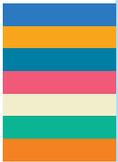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2. 초청대상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당해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
- 대담 · 토론자(시 · 도지사선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

3. 초청 및 진행

- 대담 ·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 포함)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 · 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 의사 표시, 약속을 할 수 없음.



② 보충설명

- 공선법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등 특정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서 '단체'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집단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2000. 3. 22. 회답).
-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대담·토론회장은 옥내에서 개최하되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지지의사 표방(2002. 5. 23 회답)
 -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할 것임.
- 공선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후보자 참여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 역시 허용됨(대법원 2004. 5. 31. 2003수26).

3)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1995. 4. 6. 회답).



- 학생회 · 대학교 · 아파트자치회 · 전국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책위원회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1995. 6. 9 회답).
-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제95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6. 4. 3. 회답).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1 핵심정리

1. 초청주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 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 전자간행물 ·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언론사

2.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3. 시 기 : 선거운동기간중.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4. 초청 및 진행 등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 ·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 · 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고, 방송시설이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 · 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 · 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5. 비용부담

-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 · 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② 보충설명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란 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후보자나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을 말함.
-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언론기관이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임(2006. 4. 20. 회답).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172).
-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공정보도의무나 허위보도금지 등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취재·보도를 함에 있어 그 형식이나 방법은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비록 제82조에서 대담·토론회 개최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외의 기간에 개최되는 대담·토론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고유기능으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음(대법원 1995.11.7. 95수14)고 보았으나,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은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는 규정(헌법재판소 2003. 2. 27, 2002헌마106)’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전에는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화상대담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고, 일정한 장소에서 대담을 목적으로 만나서 이를 실시하고 보도한 이상 그 형식에 불구하고 법에 위반됨(2006. 12. 21.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제82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보도하거나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7. 16.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언론사가 제8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토론회를 중계 방송하면서 '댓글 토론평'을 운영하는 때에는 제254조에 위반됨(2006. 4. 20. 회답).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것은 제108조에 위반됨(2007. 11. 25. 회답).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질문을 수집·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은 제98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25. 회답).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1 핵심정리

1. 주관별 개최대상 선거와 횟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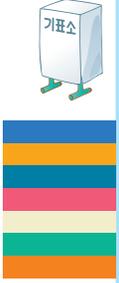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중[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제외)]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 ※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

2. 선거별 초청 대상후보자

-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①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②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그 보궐선거등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④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① 위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자
 - ②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대담·토론회 개최

-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최하여야 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보충설명

- 법 제81조와 제82조에 의한 대담·토론회는 그 개최여부가 자율적인데 반하여, 이 조에 의한 대담·토론회는 국가기관이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한정된 방송시설과 방송시간 등으로 인하여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현실과 선거운동방법으로서의 효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임.
- 방송매체에 의한 합동토론회는 종래 일방적인 연설회가 의견전달에 있어서 여건상 제한적이고, 자질의 상호 대비와 검증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점을 시정하여 실시간 선거인의 면전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상대후보와의 토론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대비·검증하는 새로운 선거정보제공 방식으로 채택된 것임(부산고등법원 2005. 8. 17. 2005노218).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안에 2이상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선거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주관함.
- 후보자가 당해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확보·검증하여 주장 또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부당한 공격이 아니라 현안이 된 정책과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주장 또는 의견(의혹)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의 관점에서 선거인에게 공정한 후보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록 그 주장 또는 의견(의혹) 중 추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토론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05. 8. 17. 2005노218).
- 제82조의2에 의한 대담·토론회에 있어 선거구내 후보자 총 6명중 법정요건이 되는 4명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후,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 2명에게는 방송연설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연설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4. 4. 5. 회답).

4.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가. 신문광고

① 핵심정리

1. 대상선거 및 광고주체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2.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일간신문
3. 광고기간·횟수·규격 등
 - 광고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 광고횟수 : 총 5회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 ☞ 이 경우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1회로 봄.
 - ※ 종전과 달리 신문광고의 색고 및 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4.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선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를 표시하여야 함.
5. 공동광고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 후보자는 규격범위안에서 합동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약정에 의하여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게재방법
 - 광고전에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됨.
7. 광고요금산정

광고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각종 광고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②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1987. 12. 12자 중앙일보 게재 신문광고와 동월 13일자 한국일보 및 조선일보 게재 신문광고는 신문광고 게재절차를 위배한 신문광고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신문광고의 횟수에 산입함(1987. 12. 14.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광고 또는 신문광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중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글, 그림, 말 등)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관계자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다만, 직업적으로 또는 단순한 모델로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무방함(1992. 11. 20. 회답).
-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신문광고에 제88조 단서의 범위안에서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선거구역안의 같은 정당추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음(1995. 1. 13.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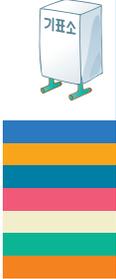
3) 할 수 없는 사례

- 신문광고는 일반주간신문에는 게재할 수 없음(1995. 11. 8 회답).

나. 방송광고

1 핵심정리

1. 광고주체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2. 광고할 수 있는 방송시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3. 광고횟수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4.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 이 경우 횟수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의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5.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6. 기 타
○ 방송광고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방송시설 이용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방송시설 경영·관리자가 방송광고 신청을 받은 순서, 이용횟수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함.
○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②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장면을 삽입한 방송광고는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에는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2004. 4. 5. 회답).

다. 후보자의 방송연설

① 핵심정리

1. 선거별 방송연설 횟수 등

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음.

구 분	연 설 자	1회 연설 시간	연 설 횟 수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자치구·시·군 의장 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별 각 2회 이내
비례대표 시·도 의원선거	정당별로 선임된 후보자 1인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2. 방송연설제작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3. 방송연설신청서의 제출 등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4. 광고요금 산정

연설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2)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 포함)을 말하며,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방송연설내용중에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가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없을 것이며, 위법의 책임은 연설을 한 후보자 등이 질 것이나 방송사로서는 그 사실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임(1995. 4. 26 회답).
-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2이상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하여 동시에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횟수는 1회로 산정하며,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할 것임(2004. 2. 11.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 기본시설의 일부인 프롬프트를 원하는 후보 및 연설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방할 것임(1987. 12. 1. 회답).
- 선거운동기간중에 다른 방송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저장하여 두고 다시보기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1. 12. 26. 회답).
- 방송연설을 실시하는 경우 앞뒤 시그널 음악 또는 배경음악(클래식 음악 등 가사가 없는 일반 경음악)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10. 30. 회답).
-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후보자·연설원이 연설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설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연설하는 모습외에 사진 등을 방영되게 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12. 17. 회답).
- 후보자가 평생 막일로 고생해서 군살이 박힌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싶어 손만을 클로즈업(Close Up)해 비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 1. 14. 회답).
- 방송연설의 시간은 1회 10분 이내이므로 1분만 연설하는 것도 사전에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함(2008. 1. 14.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1회의 방송연설에 2인 이상 연설원이 출연할 수 없을 것임(2007. 11. 14. 회답).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외부 프로덕션의 중계차로 생방송으로 제작하여 이를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만 하는 경우와 같이 외부 업체가 제작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내용을 방송할 수 없을 것이나, 후보자가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됐던 방송연설을 또 다른 방송사에서 다시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인 다른 방송사의 방송시설로 방송연설을 생방송으로 제작하면서 이를 또 다른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만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 1. 14. 회답).



라.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핵심정리

1.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2. 연설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
3. 사전통지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함.
4. 방송연설방법 등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여야 하며,
 -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되,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2 보충설명

방송연설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바, 제71조에 의한 방송연설은 후보자가 주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유료로 행하는 방송연설이고, 이 조는 방송사가 주도하여 행하는 무료의 방송연설임.



마. 경력방송

1 핵심정리



1. 선거별 경력방송

구 분	방송사	방송 횟수	기타(공통사항)
시·도지사 선거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이용 가능)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시간 : 후보자마다 1회 2분 이내 범위 • 방송내용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이용 가능)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이상	

2. 경력방송 원고 제출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경력방송 원고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 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텔레비전방송용원고 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에 산입함.
- 후보자가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송부함.
 - ※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2 보충설명

경력방송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이 갖는 정보전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거인에게 알림으로써 후보자 선택의 자료를 제공하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임.

바.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1. 주 체 :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2. 대상선거 : 모든 선거
3. 원고제공 :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경력방송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원고를 제공하여야 함.
4. 비용부담 : 경력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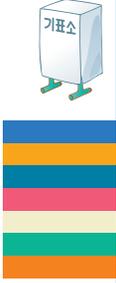
5.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1 핵심정리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2.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3.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방법
 - ※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4.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위법정보의 삭제 요청 및 이의신청 등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는 공선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취급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보충설명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는 할 수 없음.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선거일후 보전함.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판단기준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구내·외의 장소를 불문하며, 선거사무소·가정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실이나 가정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공선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가 될 것임(1994. 8. 4.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메시지(MMS)를 전송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프로그램 용량 범위안에서 문자메시지를 동보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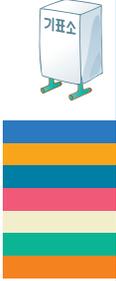
2) 선거 UCC물에 대한 판단기준

-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정상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될 수 있으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반복 게시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에 해당될 것임.
-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패러디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반복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자와 퍼나르는 자의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

3)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유권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3. 30. 회답).
-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통화를 할 경우 지지호소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 음성 또는 음악파일의 형태로 저장된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 등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경우 무방할 것임(2006. 4. 4. 회답).
- 이용자(네티즌)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가능함.
- 정당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음. 또한, 이용자는 정당 홈페이지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법임.
- 포털사이트 단체가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그러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음.





4) 할 수 없는 사례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란 송화자와 1대 1로 대화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전화를 말하는 바,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유권자들과 동시통화를 하거나 동시토론을 하는 방법은 금지된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1995. 6. 1. 회답).
- 선거일에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제 254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2002. 12. 16. 회답).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이나, 법 제91조제4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노무로 보아 정당한 대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반되지 아니함(2008. 7. 3. 회답).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그리고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나. 인터넷광고

1 핵심정리

1. 주체 및 광고방법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2. 합동광고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㉒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일반일간신문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선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것임(2006. 1. 18. 회답).
-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충청남도지사후보”를 검색하면 “충남지사후보”가 검색되고 이곳을 클릭하였을 때 특정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키워드광고는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해당될 것임(2006. 4. 18.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 검색광고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할 것임(2006. 1. 18. 회답)
-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광고비용에 관하여는 공선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법 제122조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6. 1. 18. 회답).
-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를 별도의 뉴스레터로 편집하여 뉴스레터의 수신을 허용한 네티즌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006. 5. 1. 회답).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① 핵심정리

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 등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라 함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자격 :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3.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대가수수 금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음.

4.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공선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선거운동방법은 아래와 같음.

※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106②), 전화 및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82의4), 기타 각종 연설·대담·토론 자료의 작성,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장소의 준비나 정리,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조 등

②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문구를 예비후보자·후보자·정당의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게시하는 등 공선법에 규정된 인쇄물·시설물·그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제93조제3항에,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제89조제1항에, 별도 조직·단체를 설립하는 때에는 제87조제2항에 각각 위반될 것임(2008. 3. 17.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시물을 착용한 후 가두캠페인 개최, 공개장소에서 공명선거실천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 등은 공선법에 위반됨.

7. 기타 선거운동

가. 가두 게시용 현수막

1 핵심정리

1. 게시권자 : 비례대표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후보자
2. 재질·규격 등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에서 읍·면·동마다 1매
3. 게시방법
 -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표지를 첨부하여 게시하되, 훼손·오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게시함.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 규격은 면적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형태는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음.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당일에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1면으로 된 현수막에 기호·성명·정당명을 두번씩 기재할 수 있음. 또한, 현수막 규격에 맞는 백색천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비어 양면에 동일하게 기호·성명·정당명을 게재하였을 경우 1매로 산정할 것임(1978. 12. 10.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제67조에 의한 현수막은 법정수량의 범위안에서 표지를 붙인 것이라면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음. 다만,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음.

○ 제67조에 의한 현수막에 후보자와 타인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만으로 법 제 25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2008. 4. 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2006. 5. 13. 회답).

○ 제67조의 현수막에 전광에 의한 표시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2006. 3. 22. 회답).

○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부산진구 ○○동의 3곳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제67조제1항에 위반됨(부산지방법원 2006. 10. 24. 2006고합586).



나. 어깨띠 등 소품

1 핵심정리

1. 사용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2.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3. 종 류 : 어깨띠, 윗옷(上衣), 표찰(標札),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밖의 소품
4. 선거운동방법 :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보충설명

- 규격 범위내라면 그 형태는 사각형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질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천, 종이, 비닐 등을 소재로 제작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본 조는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가능 인원을 제한할 뿐, 그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법정 인원수 이내에서 1인이 2개 이상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어깨띠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명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견·정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제84조·제88조·제250조·제251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1996. 3. 21. 회답).
-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2. 13. 회답).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사용하는 경우 무방할 것임(2006. 4. 26. 회답).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모자·티셔츠를 구입·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구입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2005. 10. 12. 회답).
- 제105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티셔츠의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3. 22.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확장장치나 마이크폰을 부착할 수 없을 것임(2006. 3. 22. 회답).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가 그 수행원과 함께 ‘○○시장 예비후보’, ‘○○시장 예비후보 수행’이란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제68조에 위반됨(대법원 2007. 8. 23. 2007도3940).



다.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① 핵심정리

1. 인원수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하여 10명) 이내.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2.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3. 방 법 :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음.

4. 표지교부·착용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관할구·시·군위원회가 배부하는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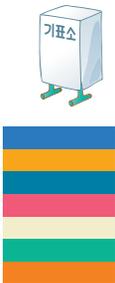
② 보충설명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통행권과 평온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후보자들간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마215).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한 사실은 제105조제1항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같은 행위는 공개장소 연설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5. 6. 9. 2004수54).





라.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1 핵심정리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2.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3.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4. 방 법 : 공선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2 보충설명

공선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 의 지지호소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 전철역 지하상가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2002. 7. 4. 회답).
-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도법 제89조에 의하여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2002. 7. 4. 회답).

마.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1 핵심정리

1. 주 체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2.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3. 선거별 사용수량
선거별로 자동차와 선박에 선거벽보등을 다음 수량의 범위안에서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동차와 선박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구 분	자동차와 선박의 수	기타(공통사항)
시·도지사 선거	시·도지사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마다 각 5대·5척이내	선거벽보·선거공 보·선거공약서를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이내, 선박 1척 마다 각 10매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이내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이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이내	

2 보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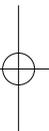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동차의 무제한적 사용은 도로교통의 무질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음.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

- 법 제91조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8. 3. 18.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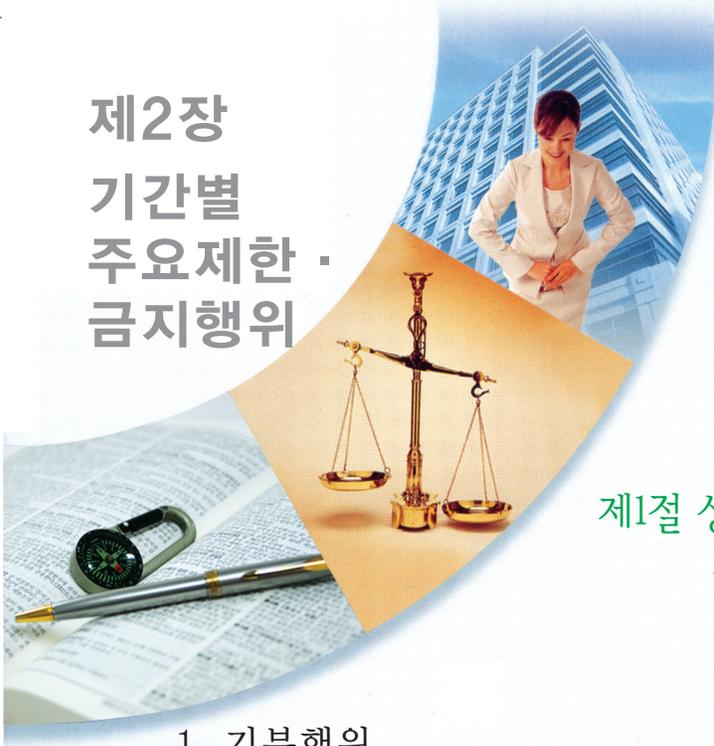


제2장

제2장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 제1절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
- 제2절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행위
- 제3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 제4절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2장 기간별 주요제한 · 금지행위



제1절 상시 제한 · 금지되는 행위

1. 기부행위

① 핵심정리

1.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2. 기부행위제한기간 : 상시

3. 주체별 제한내용

조 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113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 금지
§114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선 거 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 거 기 간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조 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115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116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공선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117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법 제112조제2항제1호)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공선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공선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크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함)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함)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공선법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공선법 제57조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의례적 행위(법 제112조제2항제2호)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외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에게 연말· 설· 추석·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후보자·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1. 후보자·예비후보자

-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 이하 이 목에서 같음)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이하 이 목에서 같음)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공선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
 -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는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공선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선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구호적·자선적 행위(법 제112조제2항제3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라. 직무상의 행위(법 제112조제2항제4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





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서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

- 한국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위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공선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택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을 제외함)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마. 공선법 제112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호의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요건(법 제112조제4항)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2 보충설명

1. 기부행위의 개념과 약

-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 또는 이익 등의 사실상의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음.
- 기부행위 상대방이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 방법, 배분액 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제공’으로 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됨.
-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교부한 것만으로도 기부행위가 됨.
- 금품 등의 제공은 현실적인 제공이 있어야 하고, 제공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하며, 제공의 약속은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나중에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되는 제공죄에 흡수됨.

-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하며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함.

2. 기부행위의 상대방

- 당원협의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 여부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고,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지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6. 28. 96도1063).

당원협의회는 단순히 중앙당의 정책과 지침을 시달받는 위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역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하에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당원협의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운영위원회와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그 운영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27. 2006고합215).

- 기부행위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 공선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임(대법원 1999. 10. 12. 99도3335)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있는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여부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날이 법이 정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5. 11. 99도499)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취소한 경우 기수시기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후보자의 기부행위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달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3. 22. 96도347)

2)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청소·빨래·이발·목욕·건강체조·노래·말동무·집수리·반찬만들어 주기(반찬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주는 경우를 제외함) 등 당원들의 역무를 제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쌀·생필품·음식물·재료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남은 음식 등을 수거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함)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2. 16. 회답)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내빈 초청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외에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8. 1. 9.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떡국·국수 등 제공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한 방문목적은 갖고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예의를 갖추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총청하나로연합의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2. 9. 2006도7417)

○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에게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2008. 1. 31. 회답).

☞ 공선법 개정으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112②1자목)

3) 의례적 행위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재단법인 설립기금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다만 기금의 출연 및 설립과정에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또는 기부의 약속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2005. 6. 25.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 회갑연등에서의 음식물(답례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회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4. 11. 15. 회답).

4)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독거노인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정당이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의연금품(연탄)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정당의 당직자들이 연탄나눔운동본부로부터 연탄을 공급받아 동 본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8. 2. 4.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행위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3. 16 2007도 617판결)

○ 무료 경로식당 설립 및 운영

지방의회의회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랑의 집’을 개설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2008. 6. 10, 1994. 6. 27. 회답)

5) 직무상의 행위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저축왕 선발 및 시상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입소 노숙인 및 노숙인 쉼터를 대상으로 노숙인 저축왕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 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





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2008. 3. 7.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품(600세대에 20,000원 ~30,000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2008. 1. 23.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 직무상 행위의 한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되어 공선법 제113조 및 257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4. 3. 11. 2003도4778).

○ 전문직업인의 무료 법률상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됨(대법원 2006. 4. 27. 2004도 4987).



2.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1 핵심정리

1.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거벽보)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함.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함.

○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제3항)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또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함. 다만, 공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후보자비방죄(제251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2 보충설명

○ 입법취지

공선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에 있고, 제251조 본문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등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음.

○ '공표'의 의미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함. 이를테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연설을 하거나,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문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된 경우도 이에 해당됨. 또한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져야함.

○ 학력게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실령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음. 다만 비정규학력을 사실에 입각하여 말로 언급하거나 당내경선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허위의 사실의미 및 판단기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25. 99도4260).

○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07. 3. 15. 2006도8368).

○ 집합적 명사로 당해 표현을 한 경우 허위사실 해당여부 판단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함(대법원 2003. 2. 20. 2001도6138).

○ 공선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15. 2006도8368).





2) 허위사실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실만 있음에도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공선법 제250조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 4. 29. 2005도1259).

나)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선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함(대법원 2007. 2. 23. 2006도8098).

○ 선거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대법원 2002. 5. 24. 2002도39).

3) 비방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 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3. 15. 2006도8368).

나) 할 수 없는 사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함(대법원 1996. 11. 22. 96도1741).

3.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1 핵심정리

1. 사조직 설치금지(제87조제2항)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2. 유사기관 설치금지(제89조제1항)

누구든지 제61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제89조제2항)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보충설명



1. 설립·설치가 금지되는 사조직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적인 조직을 의미함.

2.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정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도 그 설립 또는 설치가 금지됨.

3. 유사기관의 범위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함.

4. 선거대책기구의 조직·활동·범위

○정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 선거에 당해서 전국에 걸쳐 선거운동의 준비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 하기에는 평상적인 운용체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됨.

○공선법상 허용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 1개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대책회의는 대책기구가 설치된 당사에서 설치하여야 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어떤 단체 등이 구 공선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소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함(대법원 2005. 9. 15. 2005도2246).
- 선거사무소가 정당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정당연락소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결국 그 장소에서 취급하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8. 7. 10. 98도477).

2)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출마할 생각으로, 정당의 당원들을 임원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위 단체 주최로 대입면접특강 및 입시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 경우 그 단체는 공선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됨(대법원 2006.6.27. 2005도303).
- 연구소의 직원들은 본래 업무가 아닌 피고인의 선거출마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하여 온 점에 비추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 연구소가 이용되었다고 판단되고, 입당원서를 받아 온 행위와 홍보물 제작 및 선거관련 내부 회의 개최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의 지지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준비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작용할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연구소를 유사기관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됨(서울고등법원 2004. 9. 7. 2004노143)





- 당초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구획된 시설 부문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면 이는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구의 설치에 해당함(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2006노344)
-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을 연습하는 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임(대전지방법원 1996. 8. 8. 96고합26).
- 예비후보자가 「공선법」 제62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제87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함(2008. 12. 10. 회답).



4.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 핵심정리

1.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95조)

누구든지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제96조 및 97조에서 같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2. 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6조)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음

3.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97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공선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

4.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제98조)

누구든지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1.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의 의미
제95조제1항 소정의“통상방법외의 방법”이란 간행물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킴.
-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는 해당되지 않음.

2.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 ‘허위의 사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개념과 같음. 즉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로서 그 내용이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릇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을 말함.
- ‘사실의 왜곡’
진실과 다르게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비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부가하거나 현저하게 과장하여 윤색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보도’와 ‘논평’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은 정당·후보자등의 정강·정책·정견·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함.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경영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보도 및 논평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하는 때에는 본 죄가 아니라 공선법 제85조제2항이 적용됨.

3.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본 규정은 다른 신문·방송관련 제한·금지규정과 범죄성격이 달라 처벌규정도 매수죄(제235조) 관련부분에 있고 형량도 무거우며, 몰수규정이 적용됨.
- ‘선거에 관한’이란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이 선거와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결과 언론매체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보도나 논평을 했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

-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공선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5. 6. 23. 2004도8969).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선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함(대법원 2000. 12. 8. 2000도4600).
- 신문사 발행인겸 기자가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다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발을 하였다는 허위보도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여 배부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논평한 것임(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7. 19. 2002고합240).
- 신문사 발행인겸 편집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과 홍보내용이 포함된 신년인사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은 신문의 불법이용을 통한 금품을 제공받은 것임(대법원 2004. 10. 15. 2004도5172).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선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는 행위로서 제8조 및 제98조에 위반될 것임(2007. 12. 6. 회답).



5. 선거일 후 답례

1 핵심정리

1. 주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2. 금지행위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보충설명

- ‘선거일 후’라 함은 선거당일의 24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마감시각 이후를 뜻한다고 봄.
- 답례금지시기의 종기에 대하여 공선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 경과후의 행위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선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외 감사인사 서신으로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지역구 주민(매세대)에게 배부하거나 당선사례현수막·벽보를 첩부·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6. 4. 17, 2007. 12. 19.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일반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맥주, 삼페인, 과일, 떡 등 270,000원 상당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0. 2. 25. 99도5466).

○ 공선법 제118조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가 선거일 이후 일반 선거구민에게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등의 답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의 일반 선거구민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7. 10. 25. 2007도 4069).



제2절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행위



1. 사전선거운동

1 핵심정리

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공선법 제58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시 허용하고 있음.

2.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일당일의 선거운동과 선거기간전에 하는 선거운동으로 구분됨.

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제254조제1항)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임.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후보자등이 투표소입구에 서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후보자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후보자가 투표당일에 투표소를 돌아다니면서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인사를 하거나 정당이 선거일 당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휴대폰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임.

나. 사전선거운동(제254조 제2항)

○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보충설명

○ 사전선거운동의 의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선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누구든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3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임.
-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 당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내·홍보자료를 송부하거나, 소속 당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무방할 것임.
-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의례적·사교적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가능함.



2) 할 수 없는 사례

○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5. 9. 15. 2005도2246).

○ 동일한 날짜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 12. 23. 2004도6604).

○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 이 · 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1. 7. 13. 2001도16).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5. 10. 14. 2005도301).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구민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가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온 △△△입니다. ○○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7. 9. 7. 2007도47).

☞ 공선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지지만을 호소할 수 있음.



제3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 시설물 설치(제90조, 규칙 제50조의2)

①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제한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행위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함.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정당법 제37조제2항).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규칙 제47조의2 제1호)

-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관련(규칙 제47조의2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의례적인 행위 관련(규칙 제47조의2 제3호)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





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2 보충설명

1. 목적간주 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선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2.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과 관계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기간중에는 공선법 제90조의 적용을 받음.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의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의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4. ‘선전물’의 의미

○ 선전물이라 함은 공선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봄.

-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사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면 그 물건은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또는 같은 법 제256조제1항제2호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함.

5. '상징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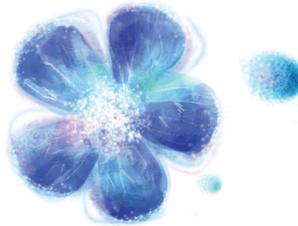
후보자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표상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외형적·내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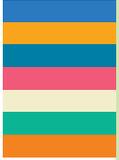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주요 지역 정책인 “별내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을 홍보·축하하는 현수막(정당 명칭 표시)을 게시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현수막의 규격·수량·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공선법 상 제한은 없음.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해당 정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하는 외에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9. 28.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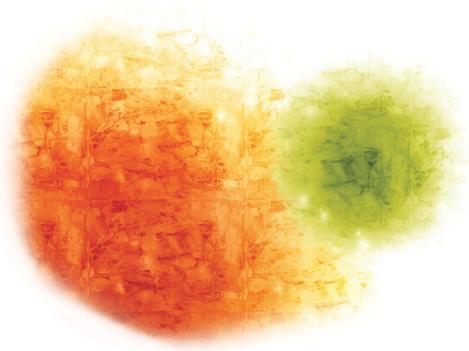
☞ 공선법 개정에 따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됨(\$90②1)





2)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상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별명(포청천)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거기간중에 선거구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연설회장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넣은 문구를 붙여놓거나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면서 위와 같은 인형을 판매하는 것은 공선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6. 23.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선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3. 8. 회답).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1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4. 금지예외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 전술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참조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보충설명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내용

본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의 대상

본 규정의 대상은 당해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포함함.

- ※ 공선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제93조 적용배제 여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규정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정당의 '명칭' 이나 후보자의 '성명' 의 범위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도화등에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의 해당성이 있음.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성명과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의 회원 약 1,015명에게 발송한 행위는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금지 조항에 해당함(대법원 2007. 2. 9. 2006도7417).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9. 5. 97도1294).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것은 그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표시되는 때에는 제93조에 위반되어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배부할 수 없을 것임(2009. 3. 31. 회답).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종교적 삶에 관한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같은 종교인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게재하여 판매·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2007. 7. 5. 회답).

-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안을 취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체의 회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후보예정자와 대담 또는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여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인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2. 5. 1. 회답).
- 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편지)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중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서면으로 새해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속 당원·조합원 또는 회원 모두에게 제한없이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제254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저촉·위반될 것임(2000. 2. 10. 회답).



3.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①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선법 제86조제6항제7호에 따라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4. 예외사항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보충설명

○ 선거에 관한 여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선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됨.

○ 광고출연이 제한되는 범위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에 서적 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2008. 6. 3.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 제9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임(2005. 10. 6.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공중전화카드에 특산품 도안과 함께 입후보예정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여 이를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제254조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2000. 12. 15. 회답).



4.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

1 핵심정리

1. 출판기념회 개최금지(제103조제5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2. 의정활동보고 금지(제111조)

가. 주체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 가능

다. 방법·대상 및 내용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음.

라. 고지벽보·장소표지 첨부·게시

○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음.

○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음.

○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마.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등

○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 교부된 세대주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1. 출판기념회 관련

○ 금지대상 출판기념회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이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개최금지기간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지 기간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됨.

2. 의정활동보고 관련

-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임.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외의 자가 이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의 주체를 위반한 것이 됨.

- 의정활동보고 대상은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임. 따라서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금지 됨.

- 의정보고의 개최가 금지되는 기간은 모든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임. 다만,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서를 송부하여 주도록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선거구민에게 그 주소로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인 전자우편으로 이를 발송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 의정활동보고는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의정활동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공선법에서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인터넷·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등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호별방문이나 가두에서의 살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경우 다른 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의정활동보고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의정보고 내용의 한계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이 국민(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님. 왜냐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루어지는 의정활동보고의 형식과 명칭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기 때문임(헌법재판소 1996. 3. 28. 96헌마18).

2) 출판기념회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공선법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서적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이 책표지에 게재된 서적을 출간하는 것은 무방함(2006. 2. 13. 회답).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명·주최자명 등 행사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

제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게시·첩부하는 경우 규격이나 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2003. 7. 7, 2006. 2. 13 회답).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2003. 7. 7, 2006. 2. 13 회답).
- ☞ 공선법 개정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할 수 있음(공선법 제112조제2항제2호 차목)

나)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정치적 경력이나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내용의 신문광고는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됨(1995. 4. 3 회답).
- 선거일전 90일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하는 것은 공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2002. 2. 9. 회답).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구안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인들이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안에서 그 찬조자들에게 서적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됨(2004. 12. 10 회답).

3) 의정활동보고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0. 4. 25. 98도4490).
- 인터넷 언론사(동아닷컴, 오마이뉴스 등), 중앙당, 지역위원회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2005. 5. 1.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 공선법 제82조의5 및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2007. 8. 14.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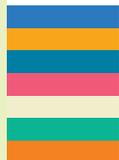
-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대법원 2006. 3. 24. 2005도3717)
- 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직무상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선거를 지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1995. 12. 27. 회답)
- 공선법 제111조의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2007. 7. 25. 회답).
- 공선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의 다음날인 2007. 12. 20.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08. 1. 9.까지) 중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2007. 12. 19.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의정활동보고서가 다음날인 12. 20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2008. 1. 9.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의정활동보고서가 다음날인 1. 10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27. 회답).

5.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제108조)

1 핵심정리

1.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 이 조에서 같음)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공선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사전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4. 여론조사 실시 제한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5.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6.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2 보충설명

1. 공표·인용보도 금지 행위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않음. 본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므로 공표·보도를 하지 않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된 것임을 밝혀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 인용보도의 경우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물론 외국의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도 금지됨.
- '공표'의 대상은 선거구민이지만 외국인에게 알려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됨.

2.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제2항)

- 금지되는 행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하거나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자체이므로 그 경위나 결과의 공표여부를 불문하며,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그 명의로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후보자의 명의로 하는 것에 해당됨.

3.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시 준수사항등(제4항·제5항)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결과를 공표·보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정인의 청탁·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기간에 행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에 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4. 12. 96도135).

2) 할 수 없는 사례

- 공선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2007. 6. 14. 2007도2741).
- 공선법 제241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제108조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예컨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와 같은 질문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무방할 것임(1997. 12. 16 회답).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2008. 1. 28. 회답).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천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2. 5. 20. 회답).

제4절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① 핵심정리

1. 주체 : 무소속 후보자
2. 금지행위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임
3. 허용행위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거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② 보충설명

- 본 조의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이다. 정당은 위 조항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이 독자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함을 표방하는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표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혹은 주의나 주장 따위를 공공연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내세우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혹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9. 5. 11. 99도556, 대법원 1999. 5. 25. 99도 279).
- 지지·추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정당으로부터 후보자에게로 향해진 것을 말하므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9. 1. 15. 98도3648).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정당표방은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표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함(대법원 1999. 10. 8. 99도2314).

-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등에 관한 내용’이라 함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정당관계가 배제된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의 유대관계를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1991. 3. 8. 의결).

2) 할 수 있는 사례

-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말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다 같은 정당인데 제가 무얼 못한다는 말입니까”라는 연설을 한 것은 당선되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정당표방으로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1998. 11. 25. 98도4430).
- ‘○○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현재 집권당인 ○○정당과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정당이 피고인을 지지 또는 추천하였음을 표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9. 1. 15. 98도3648).
-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경력 및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사진, 악수하는 사진등을 게재(1995. 4. 26. 회답)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1995. 4. 26.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단일후보로 결정된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공조 사실을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당과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였음”, 기재하고 그 옆에 ○○당의 정당로고를 같이 기재하는 것은 공선법 제84조에 위반될 것임(2009. 9. 25. 회답).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정당대표자의 추천사나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1995. 5. 4. 회답)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를 후보자연설회의 연설회원으로 선임하여 연설을 하게 하거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7. 7. 4. 회답)



2.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5조, 제86조)

1 핵심정리

1.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1) 주체 : 공무원
- 2)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3) 다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범위
 - 소속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무원의 유관사기업체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1) 주체 : 누구든지
- 2) 금지내용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가. 금지행위 주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나. 금지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 보충설명

1.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별칙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함. 공무원이 직업적인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함.

○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며, 특히 그 직무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의 의미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서 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부모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학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그 동기에 불구하고 금지됨.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관련 자료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해당됨.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행위도 포함됨. 반면에 지지도를 실제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임의대로 표기한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본조에서 금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법령이 정하는 금품 등”에는 법률과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말하며,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과 예산편성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기공식이 아닌 준공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공식, 즉시 공사를 시작할 사업의 기공식은 금지되지 아니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아니라 공선법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됨.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 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뜻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2) 할 수 없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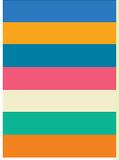
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 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법원 2006. 12. 21. 2006도7814).
- 입후보예정자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13개의 학급의 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로 하여금 기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등의 취지로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소개를 하였다면 이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광주고등법원 1998. 12. 23. 98노718 판결).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임(1996. 2. 29. 회답).
-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와 그 출판사 직원들은 조직규율 및 직무수행상 상하감독관계에 있어서 그 지위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원들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5. 19 회답).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4. 3. 25. 2003도2932).
-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5. 1. 28. 2004도6008).





○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임(서울고등법원 2003. 5. 2. 2003노206).



3.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제88조)

1 핵심정리

1. 주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2. 금지행위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예외사항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공선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음.

※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보충설명

○ 입법취지

본 조는 후보자나 그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임.

○ 본 조는 신분법 규정으로 후보자,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에게 적용되며,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되는 범위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선거구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선거운동과정에서 그 일부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





- 동시선거에서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등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선법 제82조의 7에 따른 인터넷광고, 제207조에 따른 책자형선거공보 공동작성, 제20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동개최 등임.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행위와 관계

선거구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구를 달리하는 후보자간에는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본 조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선거구를 달리하더라도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의 신분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연설했던 선임하여 연설을 하게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등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84조에 위반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에서 소속정당이 추천한 다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1995. 5. 12. 회답).
-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형인쇄물 등을 통하여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 5. 12. 회답).

2) 할 수 없는 사례

-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형인쇄물 등을 통하여 무소속후보자 또는 다른 정당의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5. 12. 회답).
- 시장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연설원 또는 대담·토론자가 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 5. 12. 회답).
-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에서 무소속후보자들이 무소속후보자연대를 결성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상호 공모 하에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무소속연대라는 명칭을 게재하거나, 동일한 색상과 모양·문안이 게재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임(2006. 4. 17. 회답).

4.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92조)

1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 제92조와 제93조제1항에 명시된 '사진'의 차이

제92조의 사진은 후보자의 사진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사진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반면, 제93조는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을 말함.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함.



5. 방송·신문 등의 광고(제94조)

①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임.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그 지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등을 밝혀 연재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보도의 범위를 넘어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행위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게재하는 때에는 제254조, 선거기간중에는 제25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료의 광고형식으로 상담기사를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선거기간중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임(1999. 9. 20. 회답).



6. 구내방송, 녹음기, 타연설회

1 핵심정리

1.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제99조)

누구든지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제100조)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타연설회등의 금지(제101조)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선법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2 보충설명

○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열차, 전동차, 선박, 여객자동차, 항공기 등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관·단체·회사등이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함.

※ 공선법 제80조에 따라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구내방송은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녹음기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녹음된 내용을 게시하거나 들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는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말함.





○ 선거기간중 공선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한 연설회등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며, 이 경우 연설회 자체가 당초에는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하였다더라도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 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선거기간중에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의 개최라도 그 집회에서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반선거구민 상대의 대중집회를 연속 또는 순회 개최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봄(1991. 3. 6.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운용에 관한 결정).

2)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연락소에 후보자의 프로필 및 정견등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비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VTR을 통해 동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무방할 것이나, 다수인을 초청하거나 집합하게 하여 상영할 수 없음(1995. 4. 6.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장소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터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선거사무원이나 친지들만이 아니라 일반 공중 수백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거기에서 이루어진 연설내용도 개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빙자하여 연설회를 개최한 것임(광주고등법원 1991. 7. 1. 98노962).
- 지하철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약·활동상황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지하철 안에 설치된 방송시설(지하철 객차 내부 모니터)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제99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3. 28. 회답).

7. 야간연설 · 각종 집회

1 핵심정리

1. 야간연설 등의 제한(제102조)

- 공선법 규정에 의한 연설 · 대담과 대담 · 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이를 할 수 없음.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

2. 각종 집회등의 제한(제103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등의 모임개최 금지(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개최 행위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제3항).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제4항)

2 보충설명

1. 야간연설 등의 제한(제102조)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연설은 공선법 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초청 대담 · 토론회 중에서 방송시설이 개최하는 대담 · 토론회와 제82조의2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 · 토론회가 여기에 해당됨.

2. 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03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모임, 반상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으나,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경우에 금지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더라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구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를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이라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선거기간중이지만 즉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시급성을 갖춘 경우로 봄.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하여서는 아니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집회'의 의미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그 모이는 인원수의 다수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특정한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위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2. 10. 26. 82도1861).

2) 할 수 있는 사례

- 공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선거기간중에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회장 수련회는 개최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회 회의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2007. 10. 30. 회답).
- 선거기간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것임. 이 경우 반상회를 개최함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7. 12. 19.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향우회 회장으로 선거기간 중에 각 출신 지역별 회장 및 전임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40여명과 함께 월례회의(회장단 모임)겸 상조회 모임을 개최하고 위 모임에 후보자가 찾아와 위 모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그 개최가 금지되는 '향민회'의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4. 8. 27. 2004노93).
-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위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땅 따먹기 자행하는 ○○시장 사퇴하라, 생각없는 ○○시장 하루빨리 물러가라” 등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임(수원지방법원 2002. 11. 22. 2002고합741).
- 한국자유총연맹은 공선법 제103조제1항에서 선거기간중 회의 또는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 자유수호옹변대회 예선 및 본선도 선거기간중에는 개최할 수 없을 것임(2002. 4. 15. 회답).



8.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제104조)

① 핵심정리

1. 주체 : 누구든지

2. 금지장소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
의 집회장소

3. 금지행위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햇불을 사용하는 행위

② 보충설명

○ 금지되는 장소는 공선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제81조·
제82조·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장소, 제140조에 따른 창당대회등과 제
141조에 의한 당원집회를 말함.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설등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함. 단순한 집회·연설 등의 질서문란 행위는 본조에 해당하고 그 정도를 넘어 집
회·연설의 방해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공선법 제237조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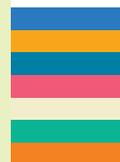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없는 사례

○ 종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
원으로 다시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연설·대

담용 차량에 접근한 후 선거운동원 2인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를 끄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임(부산지방법원 2006. 8. 1. 2006고합332).

-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미리 준비한 '미등기 해결'이라고 적은 머리띠 60여 개를 그 곳에 모인 아파트 입주인 대표들과 함께 동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미등기 해결하라"고 선창을 하고 동 입주인들로 하여금 3회 연속으로 복창하게 함으로써 연설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임(창원지방법원 1995.10.5. 95고합296)



9. 행렬 · 호별방문 · 서명날인운동

1] 핵심정리



1. 행렬등의 금지(제105조)

○ 주체 및 기간 : 누구든지 상시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호별방문금지 예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3. 서명·날인운동(제107조)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2 보충설명

1. 행렬등의 금지(제105조)

‘무리를 지어’는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오와 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직접 도보로 하거나,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같은 내용 또는 다른 내용을 반복하여 외치는 것을 말하며 연호하는 자가 1인이라도 이에 해당됨.

2. 호별방문행위(제106조)

가. 시기별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되며, 입당의 권유 및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경우는 선거기간중에 금지됨.

나. 호별방문죄의 성립조건

- ‘호별방문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 될 것이지만, 그 외에도 방문시기, 방문자 또는 피방문자의 수·범위, 방문자와 피방문자와의 관계, 방문장소에서의 언동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방문장소가 호별방문에 따른 폐해가 예상되는 곳이면 ‘호’에 해당됨.
-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인 ‘연속적으로 방문’은 각 집을 중단없이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를 달리하여 방문하거나, 수인이 공모하여 각자 한 집씩 방문하는 경우도 해당됨. 다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함.
- ‘방문’은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방문에 해당됨.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이 ‘호’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음.

다. 서명·날인운동(제107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이 금지됨. 다만, 당초에 그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서명이나 날인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선전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봄.





- '서명'은 자기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날인'은 통상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선거구민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출되었거나, 선거구민이 서명을 대행하게 한 것일 뿐 선거구민들의 실제 서명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본 조가 적용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공선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대법원 2007. 3. 15. 2006도9042).
-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공선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동 지역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도법 제89조(무허가기부요청과물품판매등에대한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2002. 7. 4. 회답).
- "점포"라 함은 가게를 벌인 집 즉, 가갯집을 말하는바, 상가가 점포와 다른 용도의 부분 즉,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1994. 12. 22. 회답).
- '서명·날인' 해당여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명·날인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그런 행위로 인해 선거구민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출되었다면 공선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선거구민이 어떤 사정으로 서명·날인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행시켰다고 하여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보임(부산고등법원 2006. 11. 29 2006노656).

2) 행렬등의 금지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원 6명이 한조가 되어 선거구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자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한 행위는 공개장소연설에서 당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제10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 6. 9 선고2004수54).

나)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청중들에게 부정선거획책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외치자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쳐서 군중심리를 이용, 군중들로 하여금 부화뇌동하여 가두행진을 하도록 선동을 하고 연호를 하면서 가두행진을 한 사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 가로행진을 한 것에 해당됨(광주고등법원 97. 2. 20.72노456).
-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1톤 트럭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로고송인 '다함께 차차차', '짧은 그대', '뽀뽀뽀' 등의 개사곡이 녹음된 녹음기를 장치한 다음 확성기를 통하여 가두방송함으로써 선거기간중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표찰을 부착한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지지를 부탁하는 구호를 외치고 후보의 명함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임(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5. 12. 7. 95고합370).

3) 호별방문행위 관련

가) 할 수 없는 사례

-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닌 점, 이 사건 각 입원실이 대부분이 다인실이기는 하나 다른 입원실과는 각각 독립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입원실도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각 입원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구고등법원 2007. 3. 15. 2007노38).





○아파트 인터폰을 누른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터폰을 통하여 위 거주자에게 “기호 나번 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아파트 11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낙선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것임(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8. 30. 2002고합308).

4) 서명·날인운동 관련

가)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모임이 단순히 특정인의 특별 사면복권만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1. 20. 회답).
- 단체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산인을 특정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게 하기 위하여 지역대표자 등 한정된 수의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정당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 및 그 가족, 수산관련 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제107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2000. 1. 24. 회답).
- 단체가 단순히 소속원중 1인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되게 하기 위한 추천서를 당해 정당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0. 3. 14. 회답).

나) 할 수 없는 사례

- 피고인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사용하거나 유인물 및 게시물에 표현된 정치적 구호나 선전문구가 단순히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거나 패배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져 그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음(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2004노1869).
- 순수히 국회의원의 불구속수사 촉구를 위하여 당해 국회의원실 또는 지구당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서명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국회의원의 선전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공선법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11. 7. 회답).

10.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제109조)

1 핵심정리

1. 전보등의 사용금지(제1항 및 제2항)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선거기간중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외사항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함)에는 이를 할 수 없음.

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제3항)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2 보충설명

-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문자메시지를 이용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전화·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금지행위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질적 의도가 그 미성년자를 통하여 그의 부모 등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조에 위반됨.





- '서신'에는 자필서신은 물론 인쇄·복사서신도 포함되며, '전기통신의 방법'은 전화·전자우편·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함.
-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 송신자의 전화에서 수신자의 전화로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메시지(MMS)를 전송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용량 범위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동보발송하는 것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가능함.
 - 휴대전화기에 자동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의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됨.

③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대법원 2009. 4. 23. 2009도1376).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방법에는 문자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됨(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제82조의4제1항제제3호)

2) 할 수 없는 사례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용량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20개 문자메시지를 넘어 1,000개 이상을 동보발송하는 것은 컴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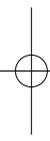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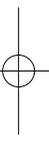
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됨.

☞ 개정된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화 또는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금지됨.

○ 1,000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됨.





제3장

제3장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 제1절 정치자금의 조달
- 제2절 정치자금의 지출
- 제3절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 제4절 회계보고 및 공개

제3장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제1절 정치자금의 조달

1. 정치자금의 개념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고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비는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되고 정치자금법이 적용됨.
- 이러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야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으로부터 기부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음.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여기서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받는 불이익※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 유죄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담임이 제한되므로 당선되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됨.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는 경우 : 10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 5년
- 또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로 됨. 이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함.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는 ①본인의 자산, ②정당의 지원금품, ③제3자로부터의 차입금품, ④후원금, ⑤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품이 있음.

가. 본인의 자산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한 금전이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말함.
- 이러한 본인의 차량·장비·물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나. 정당의 지원금품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이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등을 지원받는 것을 말함.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속 정당으로부터 차량이나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정당의 지원금을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일 후에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는 경우 그 금액에서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다.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품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품을 말함.
-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시설·장비 등을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함.
- 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율이나 가격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라. 후원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말함.
- 지방선거에서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선거와 지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뿐임.
-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정권자인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3.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가. 수입처리 회계원칙

1)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함.

-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담당함.
-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담당하고, 이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함.

2)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함.

- 물품·장비 등 현물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예금계좌가 없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처리함.

3)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로는 기부 받을 수 없음.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자산, 정당의 지원금품, 후원금, 차입금품, 후보자가 친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품 외에 제3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무상이나 싼 값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을 수 없음.



※ 회계책임자 선임 및 예금계좌신고 ※

1.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공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자는 다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2. 회계책임자 직무개시 및 임무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때부터 직무가 시작됨.
- 회계책임자가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등을 담당하고,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됨.

3. 선임 신고방법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등록 신청시에 선임·신고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별도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봄.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에 선거연락소장이 선임·신고함.

4.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시 유의사항

- 회계책임자는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 예비후보자·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5. 예금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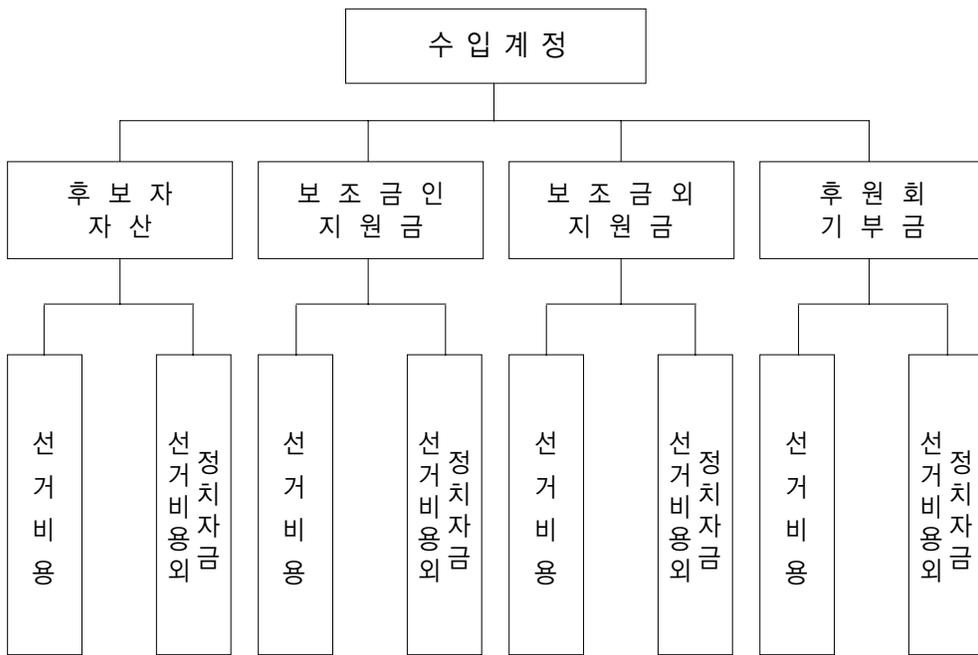
-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함.
- 정치자금 수입에 사용할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지출을 위한 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함.
- 하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됨

나.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구분

-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수입계정에는 후보자의 자산, 보조금인 지원금, 보조금외의 지원금, 후원회 기부금이 있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1) 계정별 기재내용

- 후보자의 자산 계정에는 후보자 본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친족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품을 모두 기재함.
- 지원금 계정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을 기재하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 지급받는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을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인지 아닌지는 정당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때에 통지를 하게 되므로 그에 맞게 회계장부를 정리함.
-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는 시·도지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을 기재함.
- 또한, 이러한 계정에는 다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구분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할 것인지 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기재함.
- 정치자금 지출과정에서 선거비용 과목과 선거비용외 과목은 상호 이체 처리를 통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수입처리 과정에서 세밀하게 예상 소요자금을 분석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음.



제2절 정치자금의 지출

1.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구분



-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은 규모에 있어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구분하여야 함.

가. 선거비용의 개념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 후보자가 공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누구든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공선법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도록 별도로 규정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음.

나. 선거비용의 범위

공선법에서 선거비용으로 보는 범위를 구분하면 ①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③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정당·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⑤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1)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공선법에서는 선거별로 법정 선거운동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다만,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비용, 공선법 제91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의 운영비용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③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접부비용.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 ④ 어깨띠, 현수막,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제작·게시비용
- ⑤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연설·대담용 차량 및 확장장비의 임차료,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차료·연료비·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등)
- ⑦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⑧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 ⑨ 인터넷 광고에 소요된 비용
- ⑩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 ⑪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⑫ 기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 음식물 구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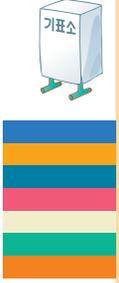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 제공비용

3)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후보자가 공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도 포함한다.

5) 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비용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에 통모한 경우도 포함한다.

※ 선거비용으로 보는 사례 ※

- 중앙당의 자산으로 구입한 연설장치·확성기가 부착된 차량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선거유세차량으로 지원할 경우 그 사용일수 또는 사용시간에 따른 시중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1995. 6. 9. 회답).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하여 평상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선거비용의 산정은 사용일수 또는 사용시간에 따른 시중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포함하여야 함(1995. 6. 19. 회답).
- 선거사무소의 청소, 차대접, 운전, 심부름 등 실제노무에 종사한 단순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자의 식사비용은 제3자가 후보자나 그 수행원과 통모함이 없이 제공한 경우라도 이는 후보자와 그 수행하는 자가 직접 소비한 것이므로 식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2000. 3. 29. 회답).
- 로고송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인격권료는 선거비용에 포함(2000. 7.

11. 회답).

○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지출한 선거비용에는 사전선거운동 등 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포함됨(대법원 1999. 4. 9. 98도1432).

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아래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에서 지출함.

1)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선거운동준비 등을 위한 여론조사비용, 예비선거사무원 교육비용, 방송연설을 위한 시연회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음.

2)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창당·합당·개편대회에 소요되는 비용(홍보물 제작비 등), 후보자선출대회비용,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비용, 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당기관지의 제작·배부 비용, 당사게시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용,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특식비 등을 말함.

○ 다만, 정당활동 명목으로 공선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위반되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비용, 공선법위반 과태료, 연설·대담용 차량 등의 주차위반 과태료 및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은행송금 및 수표발행 수수료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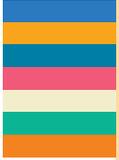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선거사무소의 임차료, 냉·난방장치 비용, 전기·조명·커튼·열쇠·썬팅·칸막이 등 설치 및 수리비, 선거사무소의 신문·잡지 구독료,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등을 말함.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별로 일정대수 이내)





서 후보자의 선거벽보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함)의 운영비용

7)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8)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다과 등의 비용과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제공 비용을 제외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일 후에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비용 등을 말함.

○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선거기간 중에 이미 지출원인이 발생하고 선거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포함됨.

라.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

1)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금액으로 함.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을 증감할 수 있음.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100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50원)

○ 특별·광역시장 선거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인구수×50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2)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시 기 : 2009. 1. 23(토)까지

2. 정치자금 지출의 회계처리

가. 지출처리 회계원칙

1)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

-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거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담당하고, 이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함.



※ 회계사무보조자 및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자금 지출 ※

1) 회계사무보조자

- 회계사무보조자란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지출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2) 예비후보자·후보자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그들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한 후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운동 비용을 교부받은 (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2)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3)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정치자금 지출은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하며,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할 수 있음.

○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란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과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방법을 말함.

4) 현금지출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1건 지출금액이 2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현금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선거비용 현금지출 금액 포함)를 넘을 수 없음.

5)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선거비용은 관할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과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간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6) 지출과목을 준수하여야 함.

정치자금은 공선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출하여야 함.

나. 정치자금 지출 처리

1) 지출방법

○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자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 이 경우 공휴일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고자 하는 날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체없이 지출하여야 함.

○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2) 지출시 유의사항

○ 지출 건별로 정치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상의 편의를 위해 현금을 출금한 후 여러 지출건에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음.

○ 소속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 후 그 잔액이 있는 경우 소속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마감일 까지 반납하여야 함.



제3절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하나임. 공선법에서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득표이상을 한 후보자에 한하여 보전하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가. 보전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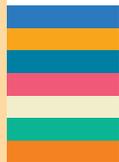
-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임.
- 선거운동에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당연히 보전대상이 아니며, 그 외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보전비용의 부담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나. 보전요건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다.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공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까지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216②8).
 - ※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도 공선법에서 허용된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수당·실비 등도 보전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보전함.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비용
- 선거운동기구 방문객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

라. 보전절차

1) 보전비용 청구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0. 6. 14(월)까지 서면으로 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함.
- 보전청구를 누락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2) 청구서류 확인·검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비용보전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구내역을 검산하고 조사하여 진실성여부를 확인함

3) 보전비용 지급

선거구위원회는 2010. 7. 30(금)까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함.



마. 보전받은 비용의 반환

후보자가 후원금이나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소속 정당 등에 반환하여야 함.

2.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 공선법에서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선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을 보전금액에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 당해 후보자나 정당에 보전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므로 처음부터 보전대상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으며, 감액은 보전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님.

가. 전액 보전제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함.

나. 일부 보전제한

1) 공선법 또는 선거비용관련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형량에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함.
- 보전하지 않는 금액은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보전제한 대상 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였다가 재판결과에 따라 정산함.

2)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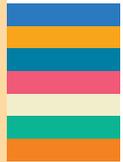
- 누가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초과지출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임.
- 초과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함.

3) 선거관련 금품 등의 수수로 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이 금품 등을 제공하여 그 제공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됨.
-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함.

다. 보전비용 반환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받은 금액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명령을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징수함.



제4절 회계보고 및 공개



1. 회계마감

- 선거일 후 20일(2010. 6. 22.)까지 회계처리를 마감하여야 함.
- 다만, 선거기간개시일 30일(2010. 4. 19)전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2.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 보고주체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나. 보고사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포함한 수입·지출내역과 증빙서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통장 사본
- 다.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각각 작성 보고하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선거연락소분 집계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후보자 등이 연대·날인함.
 - 선거사무소 회계보고 : 예비후보자·후보자와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 회계보고 : 선거연락소장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회계보고는 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 전 정치자금수입·지출내역도 회계보고에 포함(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3. 회계보고내역 열람·사본 교부

- 관할선관위가 회계보고 내역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 공개함.
 - ※ 공개기간이 아닌 때라도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공개함. 다만, 선거비용에 관한 것은 열람기간 중에만 공개함.
-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서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재산명세서, 정치자금의 수

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임. 다만, 사본교부에 있어서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은 제외함.

- 사본교부 비용은 신청자가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부담함.
-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확인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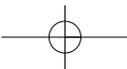


4. 회계장부 등의 보존

- 회계보고를 마친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임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선임권자는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음.

= 정치자금 회계사무 주요 일정표 =

시행일정	추진사항	담당주체	비고
1.23(토)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위원회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신청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 신고	정당·후보자	
6. 14(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정당·후보자	
6. 22(화)까지	정치자금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7. 2(월)까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제출	회계책임자	
7. 9(금)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공고	위원회	
7.9(금)~10.11(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열람· 사본교부 및 이의신청 처리	위원회	
7. 30(금)까지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위원회	



제4장

제4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제1절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2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제3절 예비후보자 등록

제4절 후보자 등록

제4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제1절 당내경선과 입후보

1.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한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 예외 :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내경선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은 당내경선을 실시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이므로 선거를 달리하거나 선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 낙선자라도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즉, 시·도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거구가 겹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구가 다른 시·도의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있음.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

- 당내경선의 방법은 투표에 의한 방법과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됨.

- 또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원과 비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당내경선에 해당되고, 여론조사에는 ‘당헌·당규’에 의한 방법과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서면합의’에 따른 여론조사 2가지가 있음.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경선결과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하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내경선 결과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당내경선에 앞서 공천희망자 중에서 정당에 대한 기여도나 당선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경선 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가능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공천희망자는 당연히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2. 사례별 입후보 제한 여부

가.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공천 희망자 중에서 당내경선 후보자로 3명을 선정되었는데, 실제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2005. 10. 13. 회답)
-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선 후보자(2005. 10. 13. 회답)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다른 제3자를 전략공천한 경우 경선후보자(2006. 5. 2. 회답)
-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2006. 5. 12. 회답)
- 3명을 선출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서 3위를 하였는데, 5위를 한 경선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당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모든 경선후보자(2006. 5. 12. 회답)
-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는데, 당헌에서 정한 경선후보자 수를 초과하여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자의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당헌에서 정한 수만큼 경선후보자를 선출한 경우 그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경선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추천 신청자(2006. 4. 3. 회답)



-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자가 탈당하여 다른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2006. 5. 12. 회답)

나.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례

- 경선기간 중에 자진 사퇴한 경선후보자(2005. 10. 13. 회답)
-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르게 당헌·당규에서 정한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경선후보자(2006 .3. 30. 회답)
-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선후보자(2006. 4. 4. 회답)

제2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1.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말함.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 따라서 국회의원보좌직원,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됨.
-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원과 직원도 입후보가 제한됨. 다만, 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다른 법령에서 “국가·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된 경우를 말함.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라.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임원

마.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전문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전무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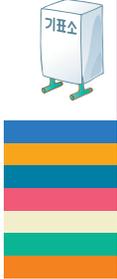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이사·감사중 상임인 자를 말함.

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사립 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립대학교 등의 교원을 말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는 언론 ※

- 정당의 기관지와 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기업체, 단체 등의 사보나 회보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를 말함.
- 전국단위 조직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구·시·군 및 시·도단위 조직의 대표자도 포함됨.

2. 사직시기

- 선거일전 90일인 2010. 3. 4.(목)까지 사직하여야 함. 사직시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함.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따라서 선거일전 90일(2010. 3. 4.)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가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본선거의 사직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직하여야 하고, 그 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2010. 3. 4.)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한편,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직을 사직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함.

※ 명예퇴직 하는 경우 사직시기 ※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실제 퇴직이 사직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함.

3. 사직의 예외

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음.



나.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①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②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 ③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됨.
- 이 경우에 미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제3절 예비후보자 등록

1.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가.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동일함. 따라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 그러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음.

※ 토요일·공휴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가?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평일에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09:00~18:00)하여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 후보자 등록신청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군의 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일요일인데 그 날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나. 예비후보자등록기간

- 시·도지사선거 : 2010. 2. 2.(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2010. 2. 19.(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2010. 3. 21.(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목록 ※

1.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표 초본등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6.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7. 학력증명서(한글 번역문 첨부)
8. 인영신고서
9. 기타 선거사무소 약도 및 예비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함.

1) 선거명(선거구명)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거와 선거구명을 기재함.
※ 예시 : “◇◇군의원선거(◇◇군가선거구)”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은 기재하지 않음.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 기간 전에 당적을 이탈·변경·취득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함.

※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당적이 변경되어도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음.

3)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한글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예시 : 이홍열, 리홍렬, 류승리, 유승리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과 다른 경우라도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로 기재하여야 함.

4) 주민등록번호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음.

5) 주 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음.

6) 직 업

○ 현재의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7) 학 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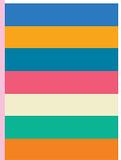
○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과 졸업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병기하는 것은 가능)을 말하며,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음. 다만, 학력을 '미기재'로 표시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가능함.

8) 경 력

○ 대표적인 주요경력 2개만을 기재하되, 예비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함.





나. 주민등록표 초본등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함.

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함.

라. 재직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만 제출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마.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직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바.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1) 대상기간 : 제한이 없으며, 생애 전 기간이 해당됨.

2) 제출대상자 : 후보자 본인

3) 제출사항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공선법 위반죄, 국민투표법 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경우를 포함)

※ 재임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와 알선수재죄를 포함

4) 제출·작성방법

- 경찰서로부터 회보받은 범죄경력 회보서의 내용을 제출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함.
- 범죄경력 회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이나 소속 정당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150일(2009. 12. 21)부터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회보받을 수 있음.

사.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1) 제출대상자 : 후보자 본인

2) 제출사항

○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 번역문을 첨부함)

※ '최종학력증명서'는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3) 제출방법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제출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함.



※ 학력증명서의 제출과 학력게재 ※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국내 정규학력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시에 그 최종학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즉, 국내 정규학력의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자는 대학원 졸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선거벽보 등에 자신이 졸업한 초·중·고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기재할 수 있고,

○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개의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력을 모두 선거벽보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고등학교와 학위를 취득한 모든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인영신고서

- 선거에 있어서 각종 신고·신청 등에 사용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인영을 신고함.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인영신고 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회계 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자. 기탁금의 납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함.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본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등록시에 납부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함.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본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됨.



3.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선법에서 요구하는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로 됨.

1) 피선거권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함.
 - ※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985.6. 3. 이전 출생자를 말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함.
 - ※ 이번 지방선거는 2010.4.4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4.3후에 귀국한 자는 2010. 5. 14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과 거주요건 ※

1. 2010. 4. 4.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2010. 4. 4.부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2010. 4. 4.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음.

2. 2010. 4. 4.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2010. 4. 4.이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음.





2) 피선거권 결격사유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됨.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되지 않음.

○ 공선법·국민투표법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범죄(정치자금법 제49조)를 범하거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2004.3.12. 전에 범한 자는 제외)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집행유예와 피선거권 ※

○ 선거법(국민투표법위반 포함),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범죄, 직무관련 뇌물수수등의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

○ 그러나 그 외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피선거권이 있음.

○ 따라서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선거일 전일이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인

경우에는 선거일 현재에는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공무원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등록이 무효가 됨.

다.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경선을 실시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면 그 등록이 무효가 됨.

라.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 이종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 동시에 이종 등록된 경우를 말하므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함.

마.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음.
- 또한, 착오 등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면 그 예비후보자등록은 무효가 됨.

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임을 제한하고 있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된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예비후보자등록은 무효가 됨.

제4절 후보자 등록



※유 의 사 항※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보자 등록신청은 그 기간이 짧고,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1. 후보자등록 절차

-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이 수리되면 후보자가 됨.
- 후보자 등록기간 : 2010. 5. 13(목) ~ 5. 14(금)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정당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

1) 추천인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내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정수 범위 초과 가능

2) 추천방법

-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천함.
-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이 무효가 됨.
 - ※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도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정당이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국회의원지역구(군 지역은 제외한다)마다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제명이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면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해야 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허용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나 당비라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기부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도 위반됨.

나.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1) 추천을 받는 자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반드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만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추천할 수 있는 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할 수 있음.
- 다른 선거는 물론 같은 선거라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함.

3)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인원

- 시·도지사선거
 -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되,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서 나누어 받아야 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구·시·군의 장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선거구의 인구수가 1천인 미만 인 경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됨.

4) 추천을 받는 기간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받음.
-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2010. 5. 8(토)부터 5. 14(금)까지임.

5) 추천을 받는 방법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야 함.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새로운 추천장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검인·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함.
- 반드시 법정 추천인원 범위 안에서 추천을 받되,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추천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선거권자의 도장을 받아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음.



3.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 아래의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



※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목록 ※

서 류 명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1. 후보자등록신청서	○	○
2. 정당의 추천서	○	×
3. 선거권자 추천장(무소속에 한함)	○	×
4. 후보자명부	×	○
5. 후보자 본인승낙서	×	○
6. 가족관계 증명서	○	○
7.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	○
8. 주민등록 초본등	○	○
9.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1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
11.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
12. 최근 5년간 납세에 관한 신고서	○	○
13. 전과기록 증명서	○	○
14. 학력증명서	○	○
15. 인영신고서	○	○(필요시)
16. 경력방송원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	×
17. 이력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	○



가. 등록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등록을 신청하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등록을 신청함.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같음.

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 정당추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첨부하고,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함.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첨부함.

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함.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의 가족사항만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라. 주민등록표 초본등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행하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함.

마. 재직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만 제출함.

바.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직하고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함.

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 산정기준일 : 2009. 12. 31. 현재

2) 신고대상자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국적 불문)

※ 혼인한 여성후보자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피부양자가 아닌 자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서에 후보자와의 관계와 함께 “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등으로 표시하고 재산내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미혼여성이 오빠와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그 오빠는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다만,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음.

3) 신고대상 재산의 범위

-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신고한다. 다만, 재산내역에 대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사실관계 또는 소명자료를 비교란에 기재할 수 있음.
-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원묘지, 상가권리금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에 해당되므로 신고하여야 함.
- 가액산정시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4) 신고대상 재산의 종류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 신고기준일 : 2010. 4. 13.(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2)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 여성후보자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본인의 병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신고서만 작성·제출함.
- 후보자 본인의 18세(1992.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인 직계비속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3) 신고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 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4) 신고·작성방법

- 병역사항 신고서와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선거 후보자용'으로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병역사항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함.
- 신고대상자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훈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자.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1)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2) 신고대상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조부모,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이 아님.
- 3) 신고사항
 - 신고대상 기간 중의 신고대상자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을 신고함.
 - ※ 신고범위
 - 소득세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2005년부터 2009년 부과(귀속)분
 -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함.





4) 신고·작성방법

- 신고서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구·시·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직선거 후보자용” 납부·체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연도별로 종류별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각각 구분되도록 작성함.
- ※ 소득세 납부세액은 2004년도 분은 2005년도 란에, 2005년도 분은 2006년도 란에, …… , 2008년도 분은 2009년도 란에 각각 기재함.
-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원단위인 경우에는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함.
-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함.

5) 납세실적증명서 발급신청

- 발급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이후
- 발급기관
 - 소득세 : 주소지관할 세무서
 - 재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 세무서의 경우 후보자등 신고대상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급신청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재산세의 경우 하나의 구·시·군청에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이면 “과세물건지”란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납부·체납세액”란에는 이들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됨.

차. 금고이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다만, 공선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

카.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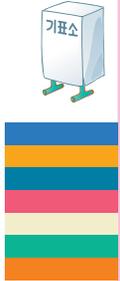
타. 기탁금의 납부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의로 무통장(이체)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를 제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후보자 1인당 기탁금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시에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함.
 - 시·도지사선거 : 5천만원
 - 구·시·군의 장선거 : 1천만원
 - 시·도의원선거 : 3백만원
 - 구·시·군의원선거 : 2백만원





※ 기탁금의 반환요건 ※

○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다만, 당선인결정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

○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 및 대집행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보전함.

파. 인영신고서

- 선거에 있어서 각종 신고·신청 등에 사용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인영을 신고함.
- 정당의 경우에도 기 등록된 인영이 아닌 다른 인영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하. 경력방송원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경력방송에 사용할 원고를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후보자 등록무효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선법에서 요구하는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로 됨.

나. 후보자 추천에 결격이 있는 때

- 정당이 선거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제외)한 것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
-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다.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라. 당적보유관련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마.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됨.

바. 정당추천 후보자의 당적 이탈·변경 및 이중 당적보유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되거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 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사.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 취득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등록이 무효로 됨.

아. 당내경선 낙선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이 무효로 됨.

자. 이중 등록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

차. 당원자격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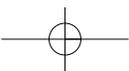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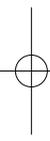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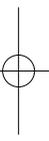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만,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

2010년 1월 인쇄

2010년 1월 발행

|발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이 용 섭

북구(광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박 찬 진

동구(대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송 봉 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행정사무관 / 장 재 영

|감 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추 형 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한 승 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관 / 유 해 원

